



2019년 제2차 임시이사회 회의록

-총179차-

【개최일시】 2019년 7월 22일(월) 16:00

【개최장소】 서울대교구청 별관 1층 대회의실

【참석임원】 이사 9명(정원 9명) / 감사 2명(정원 2명)

출석이사: Bp. 유경춘, Fr. 박경근, Fr. 황경원, 오혜경, 심점섭, 전재희, 김명근
정태호, 김영주 (9명)

출석감사: Fr. 임인섭, 김기선 (2명)

배 석: Fr. 조용철(법인 부회장), Fr. 김원호(법인 부회장),
법인사무국 담당관 8명

【의안상정】

제1호 의안 법인 「정관」 변경(안) 승인 요청의 건

제2호 의안 법인 「기본 재산 처분」(안) 승인 요청의 건

제3호 의안 법인 「기본 재산 취득」(안) 승인 요청의 건

【기타토의 및 보고사항】

【폐회】

□ 개회 정족수 보고 및 개회 선언

의장은 오후 4시 상임이사의 정족수 보고를 들은 후, 시작기도로 『카리타스인의 기도』를 바치고 정관 제19조 제2항 및 제21조 규정에 의거 본 이사회가 적법하게 성립되었음으로 개회를 선언하다.

□ 의장 유경춘 인사 말씀

바쁜 일정 중에도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제2차 임시이사회에의 참석을 위해 귀한 시간을 내어 함께 자리 해주신 임원분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2차 임시이사회에서는 법인의 「정관」 변경(안) 및 기본재산 취득(안) 등 총3건의 상정 의안을 심의·의결하고자 합니다. 참석해주신 임원분들께서는 각 상정 의안에 대하여 기탄없이 고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차 이사회기록 확인

의장은 출석이사에게 전차회의록에 대한 보완 수정할 부분의 유무를 묻고 출석이사 전원 이의가 없으므로 전차 회의록을 확정시키다.

안건심의

■ 제1호 의안 : 법인 「정관」 변경(안) 승인 요청의 건

◎ 의장 유경춘 : 제1호 의안인 법인 「정관」 변경(안) 승인 요청 건에 대하여 박경근 상임이사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임이사 박경근 : 제1호 의안인 법인 「정관」 변경(안) 승인 요청 건으로 임원분들께서는 이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인 「정관」 변경(안)

☐ 법인 「정관」 변경(안) 취지

1. 「정관」 변경(안) 대상 관련 조문

본 법인 정관 제15조(임원의 선임 등) 개정

2. 「정관」 변경(안) 사유

1) 기존 본 법인 「정관」 제15조(임원의 선임 등) 제1항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사회사무 담당주교는 법인의 대표이사로, 사회복지회 회장은 상임이사로 취임한다.'는 규정과 같은 조 제2항에 감사 중 1인은 '서울대교구 관리국장신부가 -중략- 이사회 의결을 거쳐 취임한다.'고 하여 대표이사나 감사 등을 당연직으로 선임한다는 규정이 있음.

☞ 위와 같은 규정은 비록 이사회 의결 절차를 거치나 대표이사나 감사 등 선임에 있어 이사회에서 당연직이 아니라 자율적으로 선임되어야 한다는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 「공익법인 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보건복지부 지침)」상 표준 정관에 위반되었다는 서울특별시 또는 주무관청의 지속적인 지적이 있어 개정하고자 하며

2) 기존 「정관」에는 외부추천이사 선임 근거가 없어 역시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 동법 시행령 제8조의2 등에 의거하여 신설함.

법인 「정관」 변경(안)

※ 근거 법률 등 : 「사회복지사업법」, 「공익법인 설립에 관한 법률」, 「2019년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임원) - 관련 일부 발췌

: ① 법인은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 7명 이상과 감사 2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 <개정 2012.1.26.> ② 법인은 제1항에 따른 이사 정수의 3분의 1(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이상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3배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2017.10.24.> 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에 따른 시·도사회보장위원회 2.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 ③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이사 현원(現員)의 5분의1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2.1.26.> ④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각각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2.1.26.> ⑤ 외국인인 이사는 이사 현원의 2분의1 미만이어야 한다. <개정 2012.1.26.> ⑥ 법인은 임원을 임면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⑦ 감사는 이사와 제3항에 따른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아니어야 하며, 감사 중 1명은 법률 또는 회계에 관한 지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법인은 시·도지사의 추천을 받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 따른 감사인에 속한 사람을 감사로 선임하여야 한다. <신설 2012.1.26., 2017.10.31.>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8조의 2(이사 추천의 절차 등) - 관련 일부 발췌

: ① 사회복지법인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이사의 추천을 받으려면 이사의 선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법인의 설립 취지, 목적사업의 내용 및 이사가 갖추어야 할 사항 등에 관한 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이사의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선임사유가 이사의 임기만료인 경우에는 임기만료 3개월 전부터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공익법인 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이사회) - 관련 일부 발췌

: ① 공익법인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며, 이사회 의장이 된다.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 붙임6 '사회복지법인 정관'(예시) 제16조(임원의 선임) - 관련 일부 발췌

: ① 대표이사, 이사 및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② 상임이사는 대표이사가 선임된 이사 중에서 지명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선임한다. ③ 이사 정수의 1/3(소수점 이하는 버림) 이상은 사회복지위원회 또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추천을 받아 이사회 의결을 거쳐 선임한다. ④ 이사를 임면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이를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 이하 법인 「정관」 변경(안) 본문 참조

변경 전	변경 후	사 유
제15조 (임원의 선임 등) 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사회복지담당주교는 법인의 대표이사로, 사회복지회 회장은 상임이사로 취임한다. ② 감사 중 1인은 서울대교구 관리국장신부가, 기타 이사 및 감사는 대표	제15조 (임원의 선임 등) ① 대표이사, 이사 및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② 상임이사는 대표이사가 선임된 이사 중에서 지명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선임한다.	[변경] 제1항과 제2항 종래 대표이사나 상임이사, 감사 중 1인의 선임 방법 변경(당연직 ⇨ 선출직) ⇨ 보건복지부 지침인

법인 「정관」 변경(안)

이사가 추천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취임한다. ①, ②항은 취임 등기한 후 주무관청에 보고한다.

③ 임기가 만료되는 임원의 후임자는 임기만료 1월 이전에 권위된 임원의 후임자는 권위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선임하여야 한다.

③ 이사정수의 1/3(소수점이하는 버림)이상은 사회보장위원회 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추천을 받아 이사회 의결을 거쳐 선임한다.

④ 이사를 임면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 없이 이를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임기가 만료되는 임원의 후임자는 임기만료 1월 이전에, 권위된 임원의 후임자는 권위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선임하여야 한다.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상의 정관 예시 내용(임원의 구성)을 반영하여 개정함.

[신설] 제3항 외부 추천이사 선임 근거 마련

[신설] 제4항 이사 임면 시 주무관청에 보고

[의장] 제1호 의안에 대하여 특이사항이나 기타 의견이 있다면 질의해주시기 바라며, 특별한 사항이 없다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란다.

의장은 출석 이사와 감사에게 제1호 의안의 심의를 통하여 해당 의안에 특이사항 또는 문제점이 없음을 확인한다. 이후, 의장은 출석이사 전원의 동의와 재청으로 제1호 의안인 법인 「정관」 변경(안) 승인 요청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한다.

■ 제2호 의안 : 법인 「기본재산」 처분(안) 승인 요청의 건

◎ 의장 유경춘 : 제2호 의안인 법인 「기본재산」 처분(안) 승인 요청 건에 대하여 박경근 상임이사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임이사 박경근 : 제2호 의안인 법인 「기본재산」 처분(안) 승인 요청 건으로 임원분들께서는 이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인 「기본재산」 처분(안)

▶ 법인 「기본재산」 처분 유형 : 임대차 계약 변경

▶ 법인 「기본재산」 처분 대상 수익용 부동산 현황

종류	소재지	규모(㎡)	장부상가액(원)	비고
부동산	서울특별시 성동구 옥수동 528 e편한세상 옥수 파크힐스 제112동 제15층 제1505호	■ 대 지 권: 60032.7분의 39.03 ■ 전용부분: 59.88	368,000,000	-

법인 「기본재산」 처분(안)

☐ 법인 「기본재산」 처분 승인 요청 내용

구 분	현 행	변 경	비고
임차인 성명	전 정 호	이 욱	-
임대차 계약조건	■ 보 증 금 : 일금삼천만원정(W30,000,000) ■ 월 임차료 : 일금이백일십만원정(W2,100,000)	좌 동	-
임 대 차 기 간	2018. 11. 12. ~2019. 07. 30.	2019. 07. 30. ~2021. 07. 29.	-

☐ 법인 「기본재산」 처분 사유

1. 본 법인은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당초 前 임차인인 전정호와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해당 임차인이 월 임차료를 3회 이상 연체하는 등 더 이상 계약관계를 유지할 수 없어 지난 2019년 5월 16 일자로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한 바 있음.
2. 이에 새로운 임차인을 모집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어 종래 임대차계약에 변경이 있어 처분허가 승인을 요청하게 되었으며, 임대차에 따른 월 임차료 수입은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으로 활용되어질 예정임.

[의장] 제2호 의안에 대하여 특이사항이나 기타 의견이 있다면 질의해주시기 바라며, 특별한 사항이 없다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란다.

의장은 출석 이사와 감사에게 제2호 의안의 심의를 통하여 해당 의안에 특이사항 또는 문제점이 없음을 확인하다. 이후, 의장은 출석이사 전원의 동의와 재청으로 제2호 의안인 법인 「기본재산」 처분(안) 승인 요청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하다.

■ 제3호 의안 : 법인 「기본재산」 취득(안) 승인 요청의 건

◎ 의장 유경춘 : 제3호 의안인 법인 「기본재산」 취득(안) 승인 요청 건에 대하여 박경근 상임이사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임이사 박경근 : 제3호 의안인 법인 「기본재산」 취득(안) 승인 요청 건으로 임원분들께서는 이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인 「기본재산」 취득(안)

법인 「기본재산」 취득(안)

▶ 법인 「기본재산」 취득 대상 부동산 현황

종류	소재지	규모(㎡)	취득가액(원)	비고
부동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631-14 (영신로 9마길 3)	■ 대 지: 268.00㎡ ■ 연면적: 679.08㎡ (지하1층, 지상5층)	2,950,000,000	-

▶ 법인 「기본재산」 취득의 필요성

1. 본 회 직영시설인 '요셉의원'은 가난하고 병들어 사회에서 소외되고 버림받는 이들과 함께하는 자선의료기관으로서 현재 해당 의원(소재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 100길 6)이 진료실, 진료대기실, 식당, 탈의실 등으로 공간이 협소하여 긴급한 상황에 처한 행려인, 극빈자, 노숙인들에게 일시 보호나 단기입소 등 환자의 자활이나 재활을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거나 쉼터를 제공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한 실정이며
2. 또한, '요셉의원'의 부속시설인 '목동의집' (소재지: 서울시 양천구 목동 499-35)에서 1차적으로 단기 치료 및 재활준비를 마친 환자들에게 2차적으로 공동생활을 통해 자신의 삶을 관리 통제하는 능력과 사회적응력을 향상함으로써 치료 및 자립준비를 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활용할 목적으로 취득하고자 함.

▶ 법인 「기본재산」 취득 후 활용

1. '목동의집'에서 1차적으로 단기 치료 및 재활준비를 마친 환자들이나 긴급한 상황에 처한 행려인, 노숙인들에게 일시보호나 단기입소 등 환자의 자활이나 재활을 위한 쉼터 공간을 기본적으로 제공할 수 있을 것이며,
2. 또한, 노숙인 및 행려인들을 대상으로 취업 및 기본적인 생활을 위한 프로그램이나 알코올중독자를 위한 단주친목모임과 가족모임, 무연고자나 가족과 연락이 두절된 임종환자들을 위한 임종환자프로그램, 병원차량을 이용하여 인근지역을 순회하면서 검진을 하는 등 Outreach프로그램 등 다양한 내용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하며,
3. 위와 같은 시설운영을 위한 연간 예산은 인건비 및 운영비 약 1억2천만원, 시설유지 등 장비구입비 약 3천5백만원, 프로그램운영비 약 3천만원 등 연간 2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세부적인 내용은 별첨자료를 참조해주시기 바람.

[의장] 제3호 의안에 대하여 특이사항이나 기타 의견이 있다면 질의해주시기 바라며, 특별한 사항이 없다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란다.

의장은 출석 이사와 감사에게 제3호 의안의 심의를 통하여 해당 의안에 특이사항 또는 문제점이 없음을 확인하다. 이후, 의장은 출석이사 전원의 동의와 재청으로 제3호 의안인 법인 「기본재산」 취득(안) 승인 요청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하다.

■ 기타 보고 사항

[의장은 기타 보고 사항에 대하여 법인사무국 사회복지팀, 교육·기획팀, 나눔·홍보팀, 재무·행정팀, 카리타스사회적기업지원센터의 진행(기간: 2019년 5월 17일~7월 22일) 및 예정 업무(기간: 7월 23일~10월 23일)에 대한 각 팀 담당관의 보고를 경청한 후, 출석 이사와 감사에게 관련 보고에 대한 고견 및 질의 여부를 묻다. 이에 임원진은 사회복지팀의 업무 보고 내용 중 '2019년 직영·수탁시설 정기업무점검'이 산하 시설의 운영에 있어 미흡했던 부분을 보완하여 시설 운영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 하다.]

[이후, 의장은 출석 이사와 감사에게 본 회 법인사무국 진행 및 예정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와 특이 의견이 없음을 확인하고 법인사무국과 서울대교구 내 지역 사회복지현장에서 헌신하고 있는 산하 직영·수탁시설 종사자들의 노고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사회속의 교회로서 정체성을 실현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란다고 다시 한 번 강조하여 당부 하다.]

의장은 금번 2019년 제2차 임시이사회(총179차)에 상정된 총3개 의안인, [제1호 의안] 법인 「정관」 변경(안) 승인 요청의 건과 [제2호 의안] 법인 「기본재산」 처분(안) 승인 요청의 건, [제3호 의안] 법인 「기본재산」 취득(안) 승인 요청의 건에 대하여 임원진의 심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 기타 의견이 없어 참석해 주신 임원분들께 감사 인사와 함께 마침기도로 영광송을 바치고 폐회를 선언하다.

【안내】 2019년 제3차 임시이사회 예정일 : 10월 23일(수) 16:00 서울대교구청 별관1층 대회의실
※ 단, 이사회 심의·의결을 필요로 하는 특별한 사유 발생 시 일정 변경 가능.

상기 의사를 증명하기 위하여 참석이사 전원 기명날인하여 보관하다.

사회복지법인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대표이사

유 경



상임이사

박

경



이 사

황 경



이 사

심 점



이 사

오 혜 경



이 사

전 재 회



이 사

김 명 근



이 사

정 태 호



이 사

김 영 주



감 사

임 인



감 사

김 기

